#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입주자모집공고

**%**약 Home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분양문의: 1899-5833)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1.01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u>종합저축으로 전환</u>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추시기 바랍니다.

Ж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형 해당지역		기티	기타경기				규제지역여부
민영	평택시 1년 이상 (2023.11.01. 이전투			이상 계속 거주자 전부터 계속 거주)	-	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난 및 전국)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	당첨제한	전매	제한	거주의무	기간	분양가상한기	4	택지유형
10년		3	년	없음		적용		공공택지, 대규모택지 개발지구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11.01.(금)	2024.11.11.(월)	2024.11.12.(화)	2024.11.13.(수)	2024.11.19.(화)	2024.11.21.(목)~ 2024.11.24.(일)	2024.11.30.(토)~ 2024.12.02.(월)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u>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u>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0.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2344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	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 이상, 지역별·면적별 0	·   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 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구분없이 가점순으로 선정(동점시 추첨)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구분없이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 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 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pt-thehue.com/)에 공개하며, 공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 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괴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u>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u>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당사가 본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분양대금 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C	)		C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2023.01.01. 개정된「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인지세법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여야 하며,「인지세법」제1조 2항 규정을 근거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균등하게 분담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 (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 (☎044-204-3372~5)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입처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 구매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유의사항

2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1.01.(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 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23.11.01.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24.05.01.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20%를 공급(평택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및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초 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11.11.(월)	2024.11.12.(화)	2024.11.13.(수)	2024.11.19.(화)	2024.11.21.(목)~ 2024.11.24.(일)	2024.11.30.(토)~ 2024.12.02.(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	•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평택시 축	· 대동 735-8번지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지역, 비투기과열지구인 평택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예정시기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 주택과 45599호(2024.10.3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 7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35층 7개동 총 99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591세대(기관추천 99세대, 다자녀가구 99세대, 신혼부부 178세대, 노부모부양 30세대, 생애최초 185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8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ᄌ테침		7	<b>투택공급면</b> 적	1	기타 계약		세대별	총공급			특별공급	<b>세대수</b>			일반공급	최하층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01	059.8712A	59A	59.8712	23.0643	82.9355	42.2049	125.1404	35.7582	176	18	18	31	5	33	105	71	6
	02	059.4627B	59B	59.4627	23.0824	82.5451	41.9170	124.4621	35.5143	29	3	3	5	1	5	17	12	1
	03	084.7987A	84A	84.7987	30.0047	114.8034	59.7772	174.5806	50.6463	194	19	20	35	6	36	116	78	6
2024000595	04	084.4968B	84B	84.4968	30.6019	115.0987	59.5644	174.6631	50.4659	225	23	22	40	7	42	134	91	7
	05	084.4317C	84C	84.4317	30.8983	115.3300	59.5185	174.8485	50.4271	303	30	30	55	9	57	181	122	9
	06	084.3342D	84D	84.3342	31.3165	115.6507	59.4498	175.1005	50.3688	64	6	6	12	2	12	38	26	2
					합 계					991	99	99	178	30	185	591	400	31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3.3058]
- 주거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벽체,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 층, 기계/전기실, 부대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각 세대별 주거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 공용면적(벽체면적 제외)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 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타입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 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및 공용부위 등 면적은 시설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모집공고상의 면적은 제곱미터(m²)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소수점 4째자리에서 버림)되며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대로 0.001m² 단위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 소화하였고, 이에 따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분양주택 상호간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최하층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는 총 공급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59.8712A	059.4627B	084.7987A	084.4968B	084.4317C	084.3342D
약식표기	59A	59B	84A	84B	84C	84D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약			해당		분양가격		계약금	1(10%)			중도금	t(60%)			잔금
식	공급	층	세대	======	-1		계약	계약 후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30%)
표 기	세대수		수	대지비	건축비	계	체결시	 1개월 내	'25.06.16	'25.12.15	'26.06.15	'26.12.15	'27.04.15	'27.08.16	입주지정일
		1층	6	104,167,200	236,832,800	341,000,000	10,000,000	2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102,300,000
		2층	6	104,167,200	243,832,800	348,000,000	10,000,000	2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104,400,000
59A	176	3층	6	104,167,200	252,832,800	357,000,000	10,000,000	2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107,100,000
JJA	170	4층	6	104,167,200	259,832,800	364,000,000	10,000,000	2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109,200,000
		5층	6	104,167,200	266,832,800	371,000,000	10,000,000	2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111,300,000
		기준층	146	104,167,200	275,832,800	380,000,000	10,000,000	2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114,000,000
		3층	1	103,456,700	252,543,300	356,000,000	10,000,000	2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106,800,000
59B	29	4층	1	103,456,700	259,543,300	363,000,000	10,000,000	2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108,900,000
390	29	5층	1	103,456,700	267,543,300	371,000,000	10,000,000	2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111,300,000
		기준층	26	103,456,700	276,543,300	380,000,000	10,000,000	2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114,000,000
		1층	6	147,537,700	312,462,300	460,000,000	10,000,000	3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138,000,000
		2층	6	147,537,700	322,462,300	470,000,000	10,000,000	3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141,000,000
0.4.4	194	3층	6	147,537,700	333,462,300	481,000,000	10,000,000	3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144,300,000
84A	194	4층	6	147,537,700	343,462,300	491,000,000	10,000,000	3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147,300,000
		5층	6	147,537,700	353,462,300	501,000,000	10,000,000	4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150,300,000
		기준층	164	147,537,700	368,462,300	516,000,000	10,000,000	4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154,800,000
		1층	6	147,012,200	314,987,800	462,000,000	10,000,000	3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138,600,000
		2층	6	147,012,200	324,987,800	472,000,000	10,000,000	3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141,600,000
0.40	225	3층	7	147,012,200	334,987,800	482,000,000	10,000,000	3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144,600,000
84B	225	4층	7	147,012,200	344,987,800	492,000,000	10,000,000	3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147,600,000
		5층	7	147,012,200	354,987,800	502,000,000	10,000,000	4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50,600,000
		기준층	192	147,012,200	369,987,800	517,000,000	10,000,000	4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55,100,000
		1층	6	146,899,100	315,100,900	462,000,000	10,000,000	3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138,600,000
		2층	6	146,899,100	325,100,900	472,000,000	10,000,000	3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141,600,000
84C	303	3층	9	146,899,100	335,100,900	482,000,000	10,000,000	3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144,600,000
84C	303	4층	9	146,899,100	345,100,900	492,000,000	10,000,000	3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147,600,000
		5층	9	146,899,100	355,100,900	502,000,000	10,000,000	4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50,600,000
		기준층	264	146,899,100	370,100,900	517,000,000	10,000,000	4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55,100,000
		3층	2	146,729,300	332,270,700	479,000,000	10,000,000	3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143,700,000
0.45	C 4	4층	2	146,729,300	343,270,700	490,000,000	10,000,000	3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47,000,000
84D	64	5층	2	146,729,300	353,270,700	500,000,000	10,000,000	4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150,000,000
		기준층	58	146,729,300	367,270,700	514,000,000	10,000,000	4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154,200,000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59A	59B	84A	84B	84C	84D	합 계
	국가-	유공자	5	1	5	7	9	1	28
	장기복무	제대군인	2	1	2	2	3	1	1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0	2	2	3	0	9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소기업	업 근로자	2	0	2	2	3	1	10
기친구선 국결하다		경기도	3	1	4	6	2     3     1       2     3     0       2     3     1       5     6     1       2     3     1       2     3     1       3     1     3       3     3     6       1     15     3       1     15     3       0     55     12       7     9     2	21	
	장애인	서울특별시	2	0	2	2	3	1	10
	인천광역시		2	0	2	2	3	1	10
	소	소계		3	19	23	30	6	99
CLTUH가 등병고그		기도 6개월 이상 자 (50%)	9	2	10	11	15	3	5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천광역시, 경기도 및 전국 (50%)	9	1	10	11	15	3	49
신:	혼부부 특별공급		31	5	35	40	55	12	178
노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1	6	7	9	2	30
생(	생애최초 특별공급			5	36	42	57	12	185
	합 계		105	17	116	134	181	38	59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4

구분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공급기준 공급기준		구분	처리방법				
02 12	당첨자빌	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b>부적격</b>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b>부적격</b>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공통 유의사항" 참조)				

요건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li>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경</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li> </ul>	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 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1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단	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  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 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유	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구 분	평택시 및 경기도, 전국 기타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m²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을 말함						

#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9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구분	<sup>1</sup> 분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경기남부 보훈지청 복지과 (031-259-1783)					
추천기관 추천기관							
T 전기단	중소기업 근로자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031-201-6942)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02-2225-6378)					
	장애인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031-8008-4323),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9611),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6)						
당첨자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의	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 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

# 4-2

구분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99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서울, 인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b>무주택세대구성원</b>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대상자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	전자를 말하며	d,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	<u></u> 등록표등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 <b>지역</b> : 입주자 모집	집공고일 기준	E 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	주자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단 경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평택시에 1년 이					
	상 계속하여 거주현	한 자에게 우	스선공급 함), 나머지 50%는	우선공급	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기					
			,, , , , , ,		·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 · · · · · · · · · · · · · · · · ·					
	※ 우선공급 물량의 낙첨자가 기타지역 물량에서 재경쟁 시 해당지역거주자 우선공급기준은 미적용됨.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기즈	저스	비고					
당첨자		<b>총배점</b> 100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당첨자 선정방법	배점항목			점수 40	비고					
	배점항목		<b>기준</b> 4명 이상 3명	40 35	<b>비고</b>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배점항목 계	100	<b>기준</b> 4명 이상 3명 2명	40 35 25						
	배점항목 계 미성년 자녀수(1)	100	기준 4명 이상 3명 2명 3명 이상	40 35 25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배점항목 계	100	기준 4명 이상 3명 2명 3명 이상 2명	40 35 25						
	배점항목 계 미성년 자녀수(1)	100	기준 4명 이상 3명 2명 3명 이상 2명 1명	40 35 25 15 10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배점항목 계 미성년 자녀수(1) 영유아 자녀수(2)	100 40 15	기준 4명 이상 3명 2명 3명 이상 2명	40 35 25 15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배점항목 계 미성년 자녀수(1)	100	기준 4명 이상 3명 2명 3명 이상 2명 1명 3세대 이상	40 35 25 15 10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배점항목 계 미성년 자녀수(1) 영유아 자녀수(2)	100 40 15	기준 4명 이상 3명 2명 3명 이상 2명 1명	40 35 25 15 10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5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0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 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			
. 11 · 12(3)		1년 이상 ~ 5년 미만	5	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 (4), (5) : 주민등록표등			-	(3), (4):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6):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4-3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7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신혼부부는 혼인선 ※ 단, 혼인기간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 <b>혼인기간이 7년 (</b> ■ 「신혼부부 주택 특	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 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준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	거나 전국(서울틀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b>무주택세대구성원</b>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EL #J #J	단계	소득구분	내용			
당첨자 선정방법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3단계	(35%)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4단계	(15%)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 그건게	<u> </u>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하고,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지역: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0%, 기타지역(전국)에 거주한 자 50% 순으로 공급

####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 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1.0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b>人</b> 三 ユ 브		비율	소득금액						
<u> </u>	소득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TG0H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 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 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변동산 (건물+토지)  1 3억3,100만원 이하  1 등지 1 등지 1 등지 1 등지 1 등지 1 등의 시기 2 등의 시	구분	금액	내용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부동산	3억3,100만원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구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b>무주택세대주</b>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b>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b>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b>한 분</b>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b>1순위에 해당하는 분</b>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ul> <li>■ 당첨자 선정 순서: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li> <li>■ ①지역: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0%, 전국(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기타지역)에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공급</li> <li>■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 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li> <li>-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li> </ul>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 <del>족</del> 수	35	1명	10	5명	30
	②〒671 <b>〒</b>	33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③입주자저축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가입기간	17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716716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	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	저축 가입기 <u>간</u> 7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신	일을 기준으로 함			
			' '- -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힘	<u>.</u>		
		.,				
	* 단, 정약저축에서 종	합저죽으로 전환한 경	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	자 및 그 배우자 피!	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	 나정		
ш¬						
비고			≤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	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19% 범위 : 18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지역에 거주하는 <b>무주택세대구성원</b>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l .	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15%)	세내의 철평균소득이 전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	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22/1	(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단계	(35%)					
4단계	일반공급	베데이 워퍼그스트이 저녁도 도시그르지 기그의스병 워퍼그스트이 1200/ 초고 1600/ 이상이 병				
4단계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혼인 중이거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r CLAI	******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101 717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1인 가구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0%, 전국(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기타지역)에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 ■ 자녀기준

### 비고

당첨자 선정방법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 소득기준

####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1.0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u> </u>	미뀰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O(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 자산기준

- <b>부동산가액 산출기준</b>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	구민
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5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b>청약통장 자격요건</b> 을 갖추어야 합니다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한저축 : 주택청약종한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평택시 및 경기도, 전국 기타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0%, 전국(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기타지역)에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함

###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가점제	추첨제
60㎡ 이하	40%	60%
	40%	60%

##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35		1명	10	5명	30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본인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③입주자저축	17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가입기간	17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HIOTL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배우자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	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1) 
구 분	내 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사저기즈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③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④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비고

6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ul> <li>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흠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11.19.(화) ~ 2024.11.28(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11.19.(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장소	비고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2024.11.21.(목) ~ 2024.11.24.(일) 10:00 ~ 17:00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견본주택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735-8)	-

#### ■ 공통 유의사항

7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 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동호추첨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특별공급 예비 및 일반공급 예비)

###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제출 서류

	서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0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고투니근	0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0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 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
		0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차의 확인서류: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다자녀가	0		다자녀 특공 배점표		• 견본주택 비치
다시다가 구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 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서	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준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0	한부모가족증명 서	본인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0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10	<ul> <li>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li>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li> </ul>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 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0		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 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시호브브		0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소득산정 시 공급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직계비속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0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li>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li>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li> </ul>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배우사 	• 임신의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서	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 - 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0	사실증명(신고 사실없음)	전원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0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1 세내원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
	0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0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자격 및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청약신청자 본인) 참조
	0		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인서	보이 미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생애최초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생애최초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소득산정 시 공급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li>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li>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li> </ul>

	서	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 서		• 임신의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0	사실증명(신고 사실없음)	이상 세대원 전원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0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		
	0		청약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에 해당하므로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청 불가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서	류유형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0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li>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li> <li>*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li>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청약통장 ○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0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당첨자		0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비 속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및 주소변동 사항, 성명 전부 표기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피부양 직계존·비 속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 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서-	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부적격 통보		0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주택 : 관할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한 공문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가격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받은자		0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제출 시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급신청 자 (본인)	용도 : 자격확인서류제출 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함
추가 서류 (본인외 모두 제3자)		0	위임장	공급신청 자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양식 : 견본주택 비치)
		0	대리인 신분증, 도장(서명)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sup>※</sup>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23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23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23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근 로 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하 동일) ※ 전년도(23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23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23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23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 원본 ※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와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③ 세무서
법인 대표자	① 전년도(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전년도(23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23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23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세무서/해당직 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원본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행정복지센터
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서식) 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자산 입증 서류 목록	* 「부동산등기법」제109조의2 및「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현황"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및재산세 납부내역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조건 청약자에 한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간당보험 직장기업자 이나 근로소득 영화되지 않는 지 역기보다 이 발 전 소독 전 수 변 전 전 수 등 전 전 수 등 전 전 수 등 전 전 수 등 전 전 수 등 전 전 수 등 전 전 수 등 전 전 수 등 전 전 수 등 전 전 수 등 전 전 수 등 전 전 수 등 전 전 수 등 전 전 수 등 전 전 수 등 전 전 수 등 전 전 수 등 전 전 전 수 등 전 전 수 등 전 전 수 등 전 전 수 등 전 전 수 등 전 전 수 등 전 전 전 전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확인 및 소득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모든 입증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상기 모든 서류의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제출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TJ 74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개 년도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③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세무서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5, 2016, 2018, 2020, 2021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 상기 모든 입증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1)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납부내역증명서 발급 불가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특별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특별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특별시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sup>┃※</sup>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표4]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 서류

	서	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해외근무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서류 증빙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해외근무 자	0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단신부임)		0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0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sup>※「</su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봄.(청약신청자에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

<sup>※</sup> 청약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상기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하며, 단독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sup>※</sup>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해당 국가 출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 해당 국가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

<sup>※</sup> 청약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해외체류 예외규정 적용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	<b>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b>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적여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송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조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준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제로부터 제1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시업자가 그 소속 그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3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라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무료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라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세 이상의 작계존속을 포함한다)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공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수나가나 주택이 열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되는 경우 2조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6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2조에 따라 건축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6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2조에 따라 건축하고 있는 용무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6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2조에 따라 건축하고 있는 용무로 공부를 전하고 경우 10. 제27조제3항 및 제2조조제19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소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7. 주택가의 전부 또는 의제함 가수 약을 기업하는 경수은 제외함 기간되었다면서 수관한 임자주택을 기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반당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기소적인적이 18차집관이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소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기소적인 경우 전략 수익인 경우 전략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제1호가목2기를 준용함) 나, 주커전용면적이 18차집급이 따라 결후 보안 기관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전상한다) 약단 전략 시설되어 1세 2조 각 및 제3조제1항제으로 사제호에 따라 본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수하면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이 전략된 기관을 대접하는 기관을 말한다)이 오에서 2단인 것 나는 주거전용면적이 63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대설 기관을 지원이 16차 및 2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함께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전략이 경우된 기관을 대접하는 전략 기관을 보안되었다면서 16차 및 18차 전략 기관을 제공하는 전략 기관을 보안되었다면서 16차 및 18차 및 18차 및 18차 및 18차 및 18차 및 18차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대상	계약체결 기간	장소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2024.11.30.(토) ~ 2024.12.02.(월) 10:00 ~ 16:00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견본주택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추후 별도 안내예정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735-8)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서류	유형				
구분	필수	추가 <sup>(해당자)</sup>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자격검증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추가 개별통지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0		입금증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견본주택에서는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본인	0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계약시 (대리인도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계약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 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절대 불가)		
본인계약 서류 일체	0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포함)	0		전자수입인지(사본)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수입인지 구매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 구매절차: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or 비회원 구매 → 구매 → 납부정보 입력(인지세납부 /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 금액 선택 / 1건) → 테스트 출력 → 결제(계좌이체or신용카드) → 출력 ※ 주의사항: 인지세 납부 이후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원본의 변경(소인 등)시, 인지세를 재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_, _,		0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제3자 대리인 신청시		0	위임장	- 위임장(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장소에 비치		
		0	인감증명서	- 용도 : 아파트계약위임용 (※당첨자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0	인감도장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상기 제 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수협은행	1010-2593-5334	주택도시보증공사동부PF금융지사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시 이를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 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 당첨 건은 무효 처리됩니다.

#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①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 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합니다.
-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 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합니다.
-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 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 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계약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주변단지의 신축이나 증, 개축 또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므로, 계약자는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단, 부적격당첨자(예비입주자포함)로 판명된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 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플러스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 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주소 또는 연락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상 각종 통지를 종전 주소지 또는 연락처로 발송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서면으로 통지한 계약상 각종 통지가 반송된 경우 e-mail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송시점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용합니다.
-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미기재 또는 오기재로 인한 수납 지연 등은 계약자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대금 과/오납시 환불에 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자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 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규제지역지정, 중도금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대금을 계약한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가함. 또한, 다주택 계약자,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 본 주택 건설지역인 평택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기간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 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셔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 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 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 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 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대출취급기관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 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 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 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한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 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 가 대신 납부하되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내에 중도금 대출 상환 및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 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 상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자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 입주예정일 : 2028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전에 입주 가능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 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 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취득세 부과·징수기관에서 정한 비율이상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반드시 관련기관에 별도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경로당(시니어클럽), 어린이집(키즈클럽), 작은도서관(북클럽), 열람실(독서실), 다함께돌봄센터,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키즈스테이션, 카페테 리아, 실내골프센터, 피트니스센터(GX포함), 키즈카페, 커뮤니티룸, 펫케어존, 어린이놀이터1,2, 주민운동시설, 야외 티하우스 및 휴게시설 등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주차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칙」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차로는 6.0m이상이며, 출입구의 높이는 2.3m이상입니다.
-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의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 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가 진행될 경우 시공시차에 따른 도배지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규제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 일 45일전까지 2일이상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추가선택품목, 마이너스 옵션

#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주 택 형	바그나 하자 그에	계약금 (10%) 발코니 확장 금액		비고
구 긕 ㅎ	결고니 확성 금액	계약시	입주지정일	N 2
59A	6,670,000	667,000	6,003,000	
59B	7,520,000	752,000	6,768,000	
84A	8,610,000	861,000	7,749,000	
84B	8,370,000	837,000	7,533,000	
84C	8,780,000	878,000	7,902,000	
84D	9,610,000	961,000	8,649,000	

##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

9

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비	수협은행	1010-2593-5391	주택도시보증공사동부PF금융지사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상기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아파트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미기재 또는 오기재로 인한 수납 지연 등은 계약자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대금 과/오납시 환불에 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방법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확인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합니다. (예시 101동 301호 경우, 입금자명을 '1010301홍길동'으로 기재)
- 발코니 확장비의 중도금, 잔금 납부일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지정된 납부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1개월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 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발코니 확장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평면구성 및 제공품목이 변경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돌, 타일,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 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상부세대가 비확장형인 경우 커튼박스의 깊이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튼박스의 깊이 축소됨).
- 단위세대 빌트인가전 및 일부 마감재가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품목, 유상옵션 품목, 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유상옵션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가전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 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책상, 식탁, 전시조명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세탁기, TV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유상옵션 품목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제공품목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발코니 확장부위 창호 기본 사양은 아래와 같음.

구분		내부창호 외부 <b>창호</b>		기타
기 본 형		22mm 로이 복층유리 PL이중창 (내부 로이 복층유리 + 외부 로이 복층유리)	창호없음	
	안 방	22mm 일반 복층유리 PL이중창 (내부 일반 복층유리 + 외부 일반 복층유리)	로이 복층유리 PL단창 (슬라이딩 : 22mm 로이 복층유리, 고정창 : 27.76mm 로이 복층유리)	입면분할 창호는 제조사의 제작방식에 따라 두께 및 접합방식이 변경 될 수 있음
확 장 형	거 실	-	로이 복층유리 PL이중창 (내부 : 22mm 로이 복층유리, (외부 슬라이딩 : 22mm 로이 복층유리, 고정창 : 27.76mm 로이 복층유리)	입면분할 창호는 제조사의 제작방식에 따라 두께 및 접합방식이 변경 될 수 있음
	침실, 주방, 드레스룸 등	-	22mm 로이 복층유리 PL이중창 (내부 로이 복층유리 + 외부 로이 복층유리)	일반 발코니 창호
	발코니(주방)	-	22mm 로이 복층유리 PL단창	일반 발코니 창호

- 발코니 외부샤시는 타입, 창호 위치에 따라 규격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및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부샤시는 층,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 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발코니에는 전용면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확장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 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 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각 세대의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 ■ 선택 옵션 (무상 선택 옵션)

타입	설치 항목
전타입	11자 주방(기본선택 ㄷ자 주방)
59A,B	침실1,2 통합형 구조(기본선택 침실1,2 분리형 구조)
59A	복도 팬트리 시스템 가구(포스트형)(기본선택 시스템 가구 없음)
59B, 84A, 84B, 84C, 84D	현관 팬트리 시스템 가구(포스트형)(기본선택 시스템 가구 없음)

# ■ 선택 옵션 (유상 선택 옵션)

# (1) 시스템 에어컨(일반형)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오셔시	H EH	에어컨 설치 적용실(실내기)	판매가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	실내기	실외기
	옵션선택		에어인 글지 역중글(글테기)	근메기	계약시	'25.06.16	입주지정일	르네기	르 <u>시</u> 기
59A/59B	2대	7111 0111	3,600,000	360,000	1,440,000	1,800,000	AJ052MB1PBC1,		
	공기청정형	2대	거실+안방	4,000,000	400,000	1,600,000	2,000,000	AJ020MB1PBC1	AJ025MXHNBC1

	일반형	4대		5,900,000	590,000	2,360,000	2,950,000	AJ052MB1PBC1, AJ020MB1PBC1,	
	공기청정형 4대	거실+안방+침실1+침실2	6,700,000	670,000	2,680,000	3,350,000	AJ016MB1PBC2, AJ016MB1PBC2	AJ030MXHNBC1	
	일반형	2대	71A1 . OLHI-	3,800,000	380,000	1,520,000	1,900,000	AJ072MB1PBC1,	A 1020A AVI INID.C1
	공기청정형	2대	거실+안방	4,200,000	420,000	1,680,000	2,100,000	AJ023MB1PBC1	AJ030MXHNBC1
	일반형	3대		4,900,000	490,000	1,960,000	2,450,000	AJ060MB1PBC1,	
	공기청정형	3대	거실+안방+주방	5,500,000	550,000	2,200,000	2,750,000	AJ023MB1PBC1, AJ023MB1PBC1	AJ030MXHNBC1
	일반형	4대	7111 0181 +1114 +1110	6,400,000	640,000	2,560,000	3,200,000	AJ072MB1PBC1, AJ023MB1PBC1, AJ016MB1PBC2, AJ016MB1PBC2	AJ040MXHNBC1
	공기청정형	4대	거실+안방+침실1+침실2	7,200,000	720,000	2,880,000	3,600,000		
84A/84B/84C/84D	일반형	5대	거실+안방+주방+침실1,2	7,500,000	750,000	3,000,000	3,750,000	AJ060MB1PBC1, AJ023MB1PBC1,	A 1040NAVUNIDC1
	공기청정형	5대	/	8,500,000	850,000	3,400,000	4,250,000	AJ023MB1PBC1, AJ016MB1PBC2, AJ016MB1PBC2	AJ040MXHNBC1
	일반형	6대	고시 , 아바 , 조바 , 치시1 2 , ㄷ 페 ᄉ ᄅ	9,100,000	910,000	3,640,000	4,550,000	AJ060MB1PBC1, AJ023MB1PBC1, AJ023MB1PBC1,	A IOEONAVUNIDO1
	공기청정형	6대	거실+안방+주방+침실1,2+드레스룸	10,300,000	1,030,000	4,120,000	5,150,000	AJ016MB1PBC2, AJ016MB1PBC2, AJ016MB1PBC2	AJ050MXHNBC1

<sup>※ 59</sup>타입 드레스룸에는 시스템에어컨 설치가 불가하며, 84타입 드레스룸의 경우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제습기 옵션 선택불가합니다.

# (2) 천장형 빌트인 제습기

타입	설치 항목	제조사	품명	판매가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
	르시 정국	세포시	<b>6</b> 0	근데기	계약시	'25.06.16	입주지정일
전 타입	드레스룸 천장형 빌트인 제습기	삼성	AY047BA1SBA	1,200,000	120,000	480,000	600,000

(단위 : 원, VAT포함)

# ■ 시스템에어컨 및 제습기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시스템에어컨 및 제습기	수협은행	1010-2643-2195	주택도시보증공사동부PF금융지사

<sup>※</sup> 제습기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배관을 공유하므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옵션 선택불가합니다.

#### ■ 시스템 에어컨 및 제습기 유의사항

- 시스템 에어컨 및 제습기는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 계약으로 계약주체는 ㈜현대에코시스템이며,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및 제습기는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계약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 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및 제습기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단종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 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및 제습기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및 제습기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시스템 에어컨 및 제습기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및 제습기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배관(거실, 안방)은 설치되지 않으며, 상기 시스템 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냉매배관(거실, 안방)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의 위치, 스프링클러의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 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실의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주방구조 및 드레스룸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제습기의 소모성 교환 품목은 선택 전 제조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및 실외기는 동일 평형 및 동일 실별, 동일한 위치이더라도, 제조사에 따라 용량 및 성능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에어컨 냉매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 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의 관리문제(발주 및 설치)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공급계약이 불가합니다.
- 59타입의 드레스룸은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 불가 합니다.
-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미기재 또는 오기재로 인한 수납 지연 등은 계약자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대금 과/오납시 환불에 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현관/복도/거실 옵션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품명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87	古の			계약시	입주지정일
현관 특화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 도어)+추가 오픈장 및 복도장	59A	1,630,000	163,000	1,467,000
현관 중문	여닫이 도어	59A	1,100,000	110,000	990,000

			59B	1,110,000	111,000	999,000
			84A	1,110,000	111,000	999,000
		3연동 슬라이딩 도어	84B	1,110,000	111,000	999,000
			84C	1,110,000	111,000	999,000
			84D	1,110,000	111,000	999,000
			59A	650,000	65,000	585,000
			59B	650,000	65,000	585,000
11HLTL		지바다 게임 중대 미 취임 구대	84A	250,000	25,000	225,000
고급 신발장		신발장 내부 측면 및 하부 조명	84B	250,000	25,000	225,000
			84C	250,000	25,000	225,000
			84D	1,000,000	100,000	900,000
추가 신발장	추	가 신발장 + 현관팬트리 내부 오픈 선반장	84B,C	1,340,000	134,000	1,206,000
			59A	4,540,000	454,000	4,086,000
		아트월, 다이닝 벽 : 세라믹 타일	59B	4,540,000	454,000	4,086,000
세라믹 아트월	색상		84A	6,560,000	656,000	5,904,000
# ' ' ' ' ' ' ' ' ' ' ' ' ' ' ' ' ' ' '	LIGHT/		84B	6,360,000	636,000	5,724,000
, _	DARK 택1	아트월, 다이닝 벽, 웰컴월 : 세라믹 타일	84C	6,360,000	636,000	5,724,000
	(11주방 선택시)		84D	6,430,000	643,000	5,787,000
			59A	1,290,000	129,000	1,161,000
거실, 주방, 복도	웰컴	월, 소파 뒷벽, 거실창, 복도 벽체 : 시트 판넬	59B	870,000	87,000	783,000
시트 판넬			84A	1,370,000	137,000	1,233,000
(세라믹 아트월			84B	1,510,000	151,000	1,359,000
타일 선택시)		소파 뒷벽, 거실창, 복도 벽체 : 시트 판넬	84C	1,510,000	151,000	1,359,000
12 2 1 1/			84D	980,000	98,000	882,000
			59A	1,590,000	159,000	1,431,000
거실, 주방, 복도			59R	1,170,000	117,000	1,053,000
기말, ㅜo, ᆨㅗ 시트 판넬			84A	1,960,000	196,000	1,764,000
(세라믹 아트월	다이닝 벽	, 웰컴월, 소파 뒷벽, 거실창, 복도 벽체 : 시트 판넬	84B	2,020,000	202,000	1,818,000
타일 미선택시)			84C	2,020,000	202,000	1,818,000
			84D	1,520,000	152,000	1,368,000
			59A	1,230,000	123,000	1,107,000
			59B	1,230,000	123,000	1,107,000
거실, 주방, 복도			84A	1,590,000	159,000	1,431,000
기일, 구성, 독조 에디톤 바닥		지정 에디톤 마감	84B	1,590,000	159,000	1,431,000
에니는 미그			84C	1,640,000	164,000	1,476,000
			84D	1,640,000	164,000	1,476,000
	r 7.1	실 우물천장 상하향 등(주등 미설치)+실링팬	59A	3,400,000	340,000	3,060,000
	[27	별 구물선성 성여왕 등(구등 미월시)+월당펜 +아트월,웰컴월 픽쳐레일 일체형 조명]	59A 59B	3,400,000	340,000	3,060,000
		ㅜ시그럴,끝다면 크시네고 크세성 또정]			· ·	
고급 조명 특화	-71	사 오무워져 사취하 도/조트 미서비 시리해	84A	4,370,000	437,000	3,933,000
		실 우물천장 상하향 등(주등 미설치)+실링팬	84B	4,370,000	437,000	3,933,000
	+	월 픽쳐레일 일체형 조명+주방 우물천장 및 간접조명]	84C	4,370,000	437,000	3,933,000
			84D	4,370,000	437,000	3,933,000

<sup>※ 59</sup>타입 세라믹 아트월은 LIGHT 색상이며, 84타입 세라믹 아트월은 ㄷ자주방 선택 시 LIGHT 색상, 11자 주방 선택 시 고급 주방특화에 맞는 색상 적용

(4) 침실/가전/욕실/주방 옵션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설치 항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제작품 (상부장)	59A	1,200,000	120,000	1,080,000
	·11   L (O   O)	59B	1,200,000	120,000	1,080,000
냉장고 장		84A	1,690,000	169,000	1,521,000
0010	제작품 (상부장+키큰 선반장)	84B	1,500,000	150,000	1,350,000
	세극품(6구6+기급 연단6)	84C	1,500,000	150,000	1,350,000
		84D	1,690,000	169,000	1,521,000
침실2 붙박이장	제작품	전타입	1,450,000	145,000	1,305,000
인덕션	(쿠첸)CEN-IF3A0NBA (3구 인덕션)	전타입	290,000	29,000	261,000
전기오븐	(삼성전자)NQ36A6555CK	전타입	460,000	46,000	414,000
식기세척기	(삼성전자)DW60T7065SS(12인용) + 가구도어 부착형	전타입	960,000	96,000	864,000
	(LG)오브제컬렉션	59A	5,790,000	579,000	5,211,000
빌트인 냉장고	BC1L2AA(냉장)/BC1F2AA(냉동)/BC1K3AAC(김치)	59B	5,790,000	579,000	5,211,000
[오브제	// C/O H II 컨레 너	84A	6,840,000	684,000	6,156,000
컨버터블(냉장/냉동	(LG)오브제컬렉션	84B	6,650,000	665,000	5,985,000
/김치)]	BC1L2AA(냉장)/BC1F2AA(냉동)/BC1K3AAC(김치)	84C	6,650,000	665,000	5,985,000
	+ 인출식 서랍장	84D	6,840,000	684,000	6,156,000
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 (공용욕실)	보보/TCB7000	전타입	340,000	34,000	306,000
복합환풍기	(그렉스)BD-150A	전타입	1,276,000	127,600	1,148,400

# (5) ㄷ자형 주방 선택시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계약금(10%) 잔금(90%) 설치 항목 타입 공급금액 구분 계약시 입주지정일 59A 3,550,000 355,000 3,195,000 59B 3,690,000 369,000 3,321,000 5,280,000 528,000 4,752,000 주방 세라믹 타일 색상 84A 주방 벽,상판 : 세라믹 타일 (ㄷ 자 주방) LIGHT 상부장 하부 조명(노출형)+사각 싱크볼 84B 5,020,000 502,000 4,518,000 84C 5,020,000 502,000 4,518,000 84D 5,020,000 502,000 4,518,000 59A 1,980,000 2,200,000 220,000 59B 2,200,000 220,000 1,980,000 280,000 2,520,000 84A 2,800,000 드레스룸 특화 1 화장대 + 시스템가구(포스트형) 84B 2,740,000 274,000 2,466,000 2,740,000 274,000 2,466,000 84C 84D 2,850,000 285,000 2,565,000

(단위 : 원, VAT포함)

# (6) 11자형 주방 선택시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단우	١.	원,	VAT포함)	
( i ' T		η, Τ	VAITE	

구분		설치 항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 <del></del>		르시 경국	ᅴᆸ	0007	계약시	입주지정일
			59A	240,000	24,000	216,000
			59B	240,000	24,000	216,000
즈바 스나 트칭		즈바 팬트리 시스템 가기/파스트형\	84A	480,000	48,000	432,000
주방 수납 특화		주방 팬트리 시스템 가구(포스트형)	84B	390,000	39,000	351,000
			84C	570,000	57,000	513,000
			84D	640,000	64,000	576,000
	색상	세라믹 타일(주방 벽,상판+아일랜드 상판, 측면)+ 상부 플랩장 및	59A	5,990,000	599,000	5,391,000
	LIGHT	하부조명(매립형)+독립형 렌지후드+사각 싱크볼+고급 주방 수전	59B	6,220,000	622,000	5,598,000
고급 주방 특화	A H A F	세라믹 타일(주방 벽,상판+아일랜드 상판, 측면, 정면)+상부 플랩장 및 하부조명(매립형)+독립형 렌지후드+사각 싱크볼+고급 주방 수전	84A	7,910,000	791,000	7,119,000
(11자 주방)	색상 LIGHT/ DARK 택1		84B	7,570,000	757,000	6,813,000
			84C	7,570,000	757,000	6,813,000
	DAKK = I		84D	7,570,000	757,000	6,813,000
			59A	2,120,000	212,000	1,908,000
			59B	2,120,000	212,000	1,908,000
드레스룸 특화 2		화장대 + 시스템가구(포스트형)	84A	2,430,000	243,000	2,187,000
그네그품 국외 2		외승대 + 시프립기구(포프트링)	84B	2,320,000	232,000	2,088,000
			84C	2,320,000	232,000	2,088,000
			84D	2,440,000	244,000	2,196,000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벽판넬 시스템가구(조명형)	59A	3,900,000	390,000	3,510,000
		그런도 교니의당 포의 + 국민필 시끄럽기T(또당당)	59B	3,900,000	390,000	3,510,000
올인원 드레스룸			84A	5,560,000	556,000	5,004,000
글린션 드네드늄 		원 슬라이딩 도어 + 벽판넬 시스템 가구(조명형)	84B	5,370,000	537,000	4,833,000
		면 르되어ㅇ 포의 † 크린힐 시프램 기표(포증형)	84C	5,370,000	537,000	4,833,000
			84D	5,730,000	573,000	5,157,000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수협은행	1010-2593-5516	주택도시보증공사동부PF금융지사

- 상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공급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 계약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합 환풍기는 별도 계약으로 계약 주체는 ㈜플러스인터내셔날이며,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함.
-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미기재 또는 오기재로 인한 수납 지연 등은 계약자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대금 과/오납시 환불에 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1) 공통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시 주방구조(전타입) 및 침실1,2 통합형/분리형(59타입) 무상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방구조에 따라 선택 가능한 추가 유상옵션이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및 카탈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9A타입의 복도팬트리, 기타 나머지 타입의 현관 팬트리 시스템가구는 무상 선택옵션이며, 미선택 시 시스템가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조건(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시 동급·동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인조대리석, 세라믹 및 일반 타일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 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 시공위치 개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도면, 홍보물 등의 가구 및 가구표현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 및 계약 시 선택한 사항이 우선하므로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 가구 및 인테리어 마감은 기준층 천정고 2.300mm를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 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은 공사의 착수시점 이후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선택 시 계약 체결이 가능한 유상옵션입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본 공사 시 문짝과 벽 사이에 일정 간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조사 및 형태, 색상, 유리 사양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빌트인 냉장고 및 공통가전 선택 시 유의사항

- 빌트인 냉장고 옵션 선택시 84타입은 인출식 서랍장이 적용된 냉장고장이 제공됩니다. (59타입은 인출식 서랍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인출식 서랍장의 품목의 설치 사이즈는 평형마다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브제 컨버터블 제품 특성상 가구면과 수직으로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냉동/냉장/김치 가전 간 틈이 벌어지거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오브제 컨버터블 도어 색상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색상외 변경 선택이 불가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냉동/냉장/김치 배열과 제품 도어의 열림 방향 등도 변경 선택이 불가합니다.
- 3구 인덕션 쿡탑 미선택시 가스쿡탑 3구가 설치되며 옵션금액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되었습니다.
- 84타입은 고급 주방 특화 유상옵션 선택시 컬러 타입 선택에 따라 해당 가구도어 색상이 다르게 시공 됩니다.
- 식기세척기 및 전기오븐 미 선택시 해당부위는 수납장으로 설치 됩니다.
- (3) 냉장고 장, 침실2 붙박이장, 드레스룸 수납 특화, 올인원 드레스룸 선택 시 유의사항
- 냉장고 장 선택시 59타입은 상부 수납장이 설치되며, 84타입은 상부 수납장 및 키큰 선반장이 설치 됩니다.

- 냉장고 장 선택시 입주자의 가전 제품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냉장고 장 내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침실2불박이장 옵션 선택시 가구의 후면, 바닥, 천정은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 되지 않습니다. 미 선택시 벽면은 벽지로 시공됩니다.
- 드레스룸 수납특화I.Ⅲ는 주방의 형태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다르며, 마감의 사양은 동일 합니다.
- 드레스룸 수납특화 옵션 선택시 화장대 및 드레스룸 시스템가구(포스트형)가 설치되며, 미 선택시 드레스룸 가구도어만 제공 됩니다.
- 드레스룸 수납특화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화장대의 상판은 인조 강화석으로 시공됩니다.
- 올인원 드레스룸 옵션은 11자 주방 선택시 선택 가능한 유상옵션이며, 59타입은 AL 슬라이딩 도어(3연동), 84타입은 AL 슬라이딩 도어(1도어)가 제공됩니다.
- 올인원 드레스룸의 벽판넬 시스템가구 및 AL도어의 제조사, 형태, 색상,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 주방 옵션 선택 시 유의사항

- 주방의 형태는 확장 기본시 ㄷ자형 주방이며, 11자형 주방을 무상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한 주방의 형태에 따라 주방 유상옵션 선택 품목이 다릅니다.
- 11자 주방 옵션 선택시 주방의 형태는 11자형 주방 및 주방 팬트리 가구도어가 제공 됩니다.
- ㄷ자 주방에서는 주방 세라믹 타일 옵션, 11자 주방에서는 고급 주방 특화 옵션을 선택 가능 하며, 교차 선택은 불가 합니다.
- 주방 세라믹 타일 및 고급 주방 특화 옵션 미 선택시 상판은 인조대리석(MMA급), 벽 마감은 도기질(300X600) 타일로 시공 됩니다.
- 주방 세라믹 타일 및 고급 주방 특화 옵션 미 선택시 일반 싱크볼 및 일반 여닫이장이 설치됩니다.
- 주방 세라믹 타일 및 고급 주방 특화 옵션 선택시 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이 시공되며 미 선택시 조명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고급 주방 특화 옵션 선택 시 주방 상부장은 천정과 이격되어 시공되며 가스배관이 노출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주방 세라믹 타일의 무늬와 패턴, 색상, 나누기등은 본공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접합에 의한 라인이 발생합니다.
- 고급 주방 수전 및 독립형 렌지후드는 고급 주방 특화 옵션 선택시만 제공 됩니다. 미 선택시 기본 주방 수전 및 침니형 렌지후드가 설치 됩니다.
- 주방 세라믹 타일 및 고급 주방 특화 옵션 선택시 아일랜드 상판 콘센트가 제공되며, 아일랜드 상판 콘센트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수납 특화 옵션은 11자 주방 선택시 선택 가능한 유상옵션 품목이며, 옵션 선택시 주방 팬트리 시스템 가구 (포스트형)이 설치 됩니다.

#### (5)세라믹 아트월 타일 및 거실, 주방, 복도 시트판넬 옵션 선택시 유의사항

- 세라믹 아트월 타일 과 거실, 복도 시트판넬 옵션 두가지 모두 선택시 중복 부위의 마감은 세라믹 타일로 시공됩니다.
- 59타입은 세라믹 아트월 타일 선택시 Light Type 세라믹 타일이 시공되며, Dark Type 세라믹타일은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84타입은 C자 주방 선택시 Dark Type 세라믹타일은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84타입은 11자 주방 선택시 세라믹 타일 옵션의 컬러는 선택이 가능하며(Light / Dark Type), 고급 주방특화 옵션과 중복 선택시 고급 주방특화 옵션과 동일한 컬러 (Light 또는 Dark Type)로 적용됩니다.(교차 선택 불가)
- 세라믹 타일의 무늬와 패턴, 색상, 나누기등은 본공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트판넬은 다른 옵션 선택에 따라 시공 되는 부위가 달라 질 수 있으며, 줄눈의 나누기 및 간격, 깊이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6) 거실, 주방, 복도 에디톤 바닥 옵션 선택시 유의사항

- 에디톤 마루의 제조사 및 색상, 패턴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수 있습니다.

## (7) 드레스룸 천장형 제습기 유의사항

- 제습기 작동시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4타입은 드레스룸 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시 천장형 제습기 옵션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 (8) 복합환풍기

- 복합환풍기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단종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합환풍기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복합환풍기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복합환풍기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복합환풍기 선택 시 화장실 천정의 재질이 변경되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내에 옵션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복합환풍기 적용시 욕실 천장 재질 및 점검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합환풍기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욕실 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복합 환풍기 내 욕실팬 기능 있음).
- 복합환풍기는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복합환풍기의 리모컨은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복합환풍기 위치는 본시공 시 견본주택 시공 위치와 상이할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합환풍기 옵션 선택시 공용,부부욕실 천장에 복합환풍기가 설치되며, 천장은 ABS 재질 천장으로 변경됩니다. 미 선택시 SMC 재질의 천장이 시공됩니다.
- 복합환풍기 위치는 본시공 시 견본주택 시공 위치와 상이할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9) 비데일체형 양변기 유의사항

- 비데일체형 양변기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단종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비데일체형 양변기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데일체형 양변기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데일체형 양변기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내에 옵션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비데일체형 양변기 미선택시 비데(시트비데 포함)가 설치되지 않은 양변기로 설치되며 옵션금액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되었습니다.
- 비데일체형 양변기 선택 시 시공은 공용욕실에만 설치됩니다.

##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1) 공통

- 「주택법」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입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2)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1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입니다.

품 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1)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침실, 거실, 주방, 식당, 복도 <타일, 강화석재> 현관, <타일> 발코니, 하향식피난구실, 실외기실 바닥	각실 바닥 미장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벽지, 벽 도장 (발코니, 하향식피난구실, 실외기실), 주방 벽타일, 인테리어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콘센트, 스위치의 배관		

	마감 콘센트, 스위치, 조명	배선
3) 천장	천장지, 천장 도장 (발코니, 하향식피난구실, 실외기실), 몰딩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4) 일반가구	신발장, 기타수납장	-
5) 주방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후드, 가스쿡탑 등 가전제품, 콘센트, 스위치	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 배기덕트
6) 욕실	천장, 타일(바닥, 벽), 샤워부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수전 등), 욕실 악세서리, 욕실장, 바닥 배수구 커버, 욕실 환풍기 등 시스템욕실 일체, 욕실 스피커폰	건식벽체(석고보드 마감), 설비배관, 전기배관 및 배선
 7) 창호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발코니 도 어, 하향식피난구실 도어, 실외기실 도어
8)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
9) 기타	세탁실 및 발코니 수전	도어폰,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

#### ■ 마이너스 옵션 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1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총 분양가격에 마이너스 옵션금 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됩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주거전용면적) 59A		59B 84A		84B	84C	84D	
기본선택(마이너스 옵션금액)	14,646,500	14,713,600	16,359,200	16,223,900	16,159,000	16,698,000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스템 욕실은 일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 벽체는 건식벽체(석고보드 마감)로 시공됩니다.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에는 확장형 선택시 제공하는 품목 중 바닥난방이나 발코니 창호등 일부 품목만 개별 선택하여 설치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람.
-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 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지침」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하 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확약서를 작성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건축법」제52조,「건축법 시행령」제61조,「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셔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부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마이너스 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 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오수드레인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 사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향후 계약자가 별도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 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 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입주자가 가변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 바탕처리가 없음.
- 당 현장은 시스템욕실 적용 현장으로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스템욕실 및 구성품 일체가 설치되지 않음.

# 10 단지 여건 등

# ■ 단지외부여건

-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등)은 국가기관,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에 일부 변경·취소·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로서 향후 택지지구 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 주택은 위 시행자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속한 구역에 건축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대지지분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외부에 송전탑 및 지중화 철탑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는 택지조성에 관련된 사항으로 본 단지의 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내 조성되는 단지로 향후 산업시설조성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및 매연 등의 영향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해 민원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으로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을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 계획 및 설계 등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진행 및 시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현황으로 동측은 학교 용지, 유치원 용지 및 20m도로와 인접, 서측은 근린공원, 20m도로 및 의료시설과 인접, 남측은 35~40m 도로와 인접, 북측은 20m 도로와 문화 및 지원시설이 위치하며, 인전 주거 단지로 공동6,8,9블럭이 위치합니다.
-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원, 공지, 완충녹지, 연결녹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

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에는 전력 지중화용 지상기기 및 노상시설물(전주, 가로등, 방음벽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인접 현황 등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 경계부는 인접대지 등과 바닥레벨에 차이가 있어 건축옹벽, 토목옹벽, 조경석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옹벽의 형태, 마감, 구간,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경계부 옹벽계획은 인접 단지와의 협의 및 구조계산 결과에 따라 실 시공시 옹벽의 종류, 디자인,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및 인·허가를 득한 배치의 주출입구를 제외한 단지외부로 연결되는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조성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단지 주변 유해시설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 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브레인시티는 조성중인 사업지로, 기반시설(용수, 전력, 폐수) 준공 지연으로 입주 지연이 발생 될 수 있고, 브레인시티 사업 준공이 돼야 대지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 ■ 학교, 학군, 국공립어린이집 및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

- 본 공동주택은 (가칭) "도일3초등학교" 통학구역에 해당하나, 학교 설립은 개발사업지구 세대수, 개발상황(분양공고, 착공, 입주시기), 학생발생률, 인근 학교의 학생배치여건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따른 투자 심사에서 승인되어야 신설이 가능한 사항으로 학교설립 계획은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입주 전년도에 확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 확정여부에 따라 인근학교에 임시배치를 검토하거나 공동주택 입주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입주예정인 중학생은 전산 추첨을 통해 송탄중학군 내 중학교(송탄중, 이충중, 장당중, 라온중, 은혜중, 태광중, 효명중)에 배치될 예정이나, 중학군(구)지정은 매해 전년도에 확정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배정일정 및 방법은 경기도평택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평택 내 기존 고등학교(21교)와 설립이 확정되어 추진 중인 2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 향후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 변경 등에 의해 학생 배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시행사와는 무관하므로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내 의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본 시행사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의를 관할 인허가청과 체결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조 제3호 및 제55조의 2 제3항 제3호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시설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시, 지자체와 해당구역 무상임대협약 체결 사항입니다.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무상임대 협약 체결전까지 서면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대해 반대할 경우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단지내부여건

- 단지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고층수는 주동의 최상층 층수로,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와 차이가 있으며, 지상 28~35층 규모입니다.
- 지붕은 평지붕으로, 전체동 지붕층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되며, 건축심의에 따라 경관조명이 설치됩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혼합무량판 구조로 시공됩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준공 시 당 사업장 부지의 확정 경계 및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탑상형 주동타입으로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충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105동 84D타입 측벽 인근에 미술장식품 설치 예정이며, 설치심의를 받을 예정 위치를 표기한 것으로 실시공시 세부위치와 형태는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여 야 합니다
- 단지 내 배치 구조 및 층수에 따라 일부 세대 및 동은 이삿짐 차량 접근 불가 또는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여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층 주동 진입은 동별 필로티 또는 로비로 진입하는 구조이며, 주동 위치에 따라 진입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모형도, 도면 등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층 주동 진입은 동별 필로티 또는 로비로 진입하는 구조이며, 주동 위치 및 코어별로 진입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모형도, 도면 등을 참고 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지상층 필로티는 101~103동, 105~107동에 일부 계획되어있으며, 104동은 필로티가 없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층 각 필로티 층고는 101~103동, 105~107동 : GL기준 6.3M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층 각 필로티 천정고는 101~103동, 105~107동 : 4.5M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층 각 부분별 높이는 전동 로비 천장고 : 2.4M,계획되어 있으나,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 최상층 세대는 구조상 외기에 직접 면하는 구조로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층에는 전기실/발전기실, 펌프실/저수조, 동전기실, 휀룸 등이 설치되며 발전기 등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일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근린생활시설, 재활용품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외부계단실, 놀이터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모형도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와 판매/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주출입구 및 차로) 일부는 근린생활시설 계약자, 방문객 및 차량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CCTV,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인입개폐기 및 상가용 변압기),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단지내 공공보행통로(102동, 105동 배면 위치)가 설치되며, 공공보행통로란 24시간 개방되어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안에 조성한 통로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지분은 시설별 연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및 재활용분리수거함은 근린생활시설 전용 공간으로 계획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공용부 유의사항

- 주동의 필로티 공간은 주동출입, 보행통로 또는 공용부분으로 개인이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와 현관문 사이 일부에 설치되는 홀, 복도 등의 공간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별·타입 별로 구조 및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동 지하 PIT내부에는 배수를 위한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며 펌프 가동 시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하부 PIT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 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이 각동 1개소씩 지하1층 주동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며, 세부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 세대별 동체감지시스템은 1.2층, 최상층의 외부창호주변 실내 전체, 기준층은 거실에만 설치됩니다.
- 각동 지붕층에 설치되는 태양광설비의 설치 위치, 설치 각도 및 설치 면적, 장비의 구성 등 세부사항은 태양광설비의 전력생산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설치될 예정으로 실시공시 도 면 및 모형(CG)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동 계단실 창호는 전체 고정 창호로 설치되나 3개 층마다 1개소, 최상층에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엘리베이터 전실 창호는 전층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 아파트 주동 지상출입구의 자동문의 경우 프레임이 있는 자동문 슬라이딩&스윙도어, 지하출입구는 슬라이딩 도어로 사용되는 슬라이딩 도어에는 THK12 강화유리가 적용, FIX 창호

에는 THK8 강화유리가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 옥상 및 옥탑층에는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설비(전동), 이동통신 옥외 안테나 및 중계장치 : 옥상층 (102동, 104동, 105동), 지하2층 PIT(101동, 103동, 105동, 106동), TV공 청수신 안테나(105동 5호라인 옥상 및 옥탑), 경관조명(심의기준),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다수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일부 고주파 소음 및 전자파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1층의 부대시설은 지하2층 패키지 펌프를 이용하여 단지내 오수관로에 연결되므로, 지하2층에 패키지 펌프가 설치된 주위는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도로, 주차, 외부연결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보도 포장의 패턴 및 색채, 선형 등은 단지 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모형 및 CG에 표현된 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공공장소인 필로티, 기계/전기/발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등 이 설치될 예정으로 청약 및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서측 지하1층에서 외부 도로로 이동하는 비상출구는 볼라드 및 방범 셔터가 설치되어 상시 막혀있는 구조로 이동을 통제하며, 비상시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상시 막혀있는 구조로 이동을 통제하며, 비상시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단지 관련 비상차로는 비상시에 도로 점용이 필요할 수 있고 도로 점용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맞춰 북측 1개소(지상1층에서 진입폭 : 12m) 설치되었으며, 단지 동측 유치원 부지 맞은편에 설치된 지하주차장 비상출구는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출구로 상시 방범 시설(셔터 등)을 통하여 출입 통재하오니 이점 참고하셔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 2개층이며, 지하1층 주차장으로 직진입하는 구조로 주차출입구 유효높이는 2.7m이상이며, 차로폭은 6.0m~7.0m(일부 장애인통행로 포함), 유효층고 2.7m(지하1층) 이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 주출입구는 단지 북측 아파트 전용 주차장 출입구가 1개소(지하1층 차로폭 : 12.4m, 지하2층 램프폭 : 7.0m), 비상시 사용하는 비상출구는 단지 동측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과 106동 사이에 1개소 설치 될 예정입니다.
- 단지 보행 출입은 북측 주출입구,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계단 및 엘리베이터, 작은도서관 홀, 단지 남측 104동 인접 보행출입구, 동서를 가로지르는(102동, 105동 배면부) 공공보행통로 등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배치 CG등을 통하여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외 도로(지상/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차량 소음, 분진 및 불빛 등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배치CG등에는 비상차량의 정차위치(소방차 부서공간)의 표기가 생략된 것으로 실시공시 설치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등의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포장계획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료·형태·색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외부시설물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공공장소인 필로티, 펌프/전기/발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TOP-LIGHT, 자전거보관소(285대), 재활용품보관소(8개-근생1개소 포함), 재활용품창고(지하)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의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경로당(시니어클럽), 어린이집(키즈클럽), 작은도서관(북클럽), 열람실(독서실), 다함께돌봄센터,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키즈스테이션, 카페 테리아, 실내골프센터, 피트니스센터(GX포함), 키즈카페, 커뮤니티룸, 어린이놀이터1,2, 주민운동시설, 야외 티하우스, 휴게시설 및 기타 공동시설에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분진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엘리베이터의 구조물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5동,107동 사이, 103동,104동 사이에는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이 설치 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 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및 경비실, D.A, 구조물, 저층부마감, 동별 출입구 디자인 및 장식물, 단지내부 보행로 및 차로 바닥포장재 및 난간대 등 모든 외부 환경 시설물은 세부적인 디자인 작업 진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위치 및 크기, 색상, 재질, 형태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외보안등 등 각종 조명 및 기타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101동, 106동, 107동은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 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근린생활시설 인접부에 별도의 재활용품보관소가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으로 미술장식품 심의 시 위치가 결정되며, 장식품 설치로 인하여 일부세대의 조망권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외관, 조명

- 본 단지의 BL CL 및 각종 브랜드 로고 표기는 일부 주동 상단부 벽부 또는 최상층 위 파라펫 부위에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상세설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건물외관(옥탑, 주동출입구), 아파트의 외부색채/패턴, 줄눈 패턴, 주현관, 필로티(내 외부) 등의 세부디자인은 실시설계 완료시 확정되며, 상세 변경 반영되어 시공될 예정 입니다.
- 본 단지의 주동 주출입구 게이트 디자인은 위치에 따라 석재 돌출치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게이트의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동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 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구 디자인 벽체 및 데크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브랜드의 명칭, 로고의 디자인, 규격,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하여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주동 저층 외벽부 마감 5~7개층은 석재 및 일부 수성페인트 혼합, 상부층 수성페인트 마감이 기본 마감으로 시공됩니다.
- 본 단지는 주동 특화 디자인을 통해 적용된 저층부 석재 및 외부 마감의 적용 높이, 프레임(외벽마감) 돌출, 코어부 커튼월룩 등 동별, 층별, 세대 위치별로 차이가 있어 일조권 및 환경권, 조망권 등 변동이 있으므로 견본주택(모형)을 방문 확인하시어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석공사에 쓰이는 자재가 천연석재일 경우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VEIN)는 천연석 특성 또는 제품 간 차이로 인하여 색상 및 무늬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일부 옥상/옥탑부에 설치되는 경관조명의 상세 계획은 미정으로, 실시공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옥상 및 옥탑층에는 의장용 구조물, 설비 구조물 등 시설물이 다수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일부 고주파 소음 및 전자파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자료(모형, CG등)에 표현된 옥탑 디자인 구조물의 규격, 기둥의 위치/크기, 간살 등의 규격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적인 표현으로 실시설계 및 구조계산에 따라 세부규 격이 결정되므로, 분양 홍보자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건물외관 측벽부 BI는 평택시 옥외광고물 심의를 통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경관조명, 보안등, 수목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조명 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비용 일체(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가로등, 보안등, 수목 등 및 기타 조명에 의하여 야간에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가 설치되며, 실외기 장비 설치로 인하여 소음 및 시각적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계약 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 및 변경, 시공 등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주출입구 진입후 좌측 107동 배면부 인접하여 위치합니다.
- 본 단지의 근린생활시설용 주차는 지상층에 별도로 구분/구획되어 있으나, 출입구 및 차로, 통로 등은 아파트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에 레벨 차이로 인해 경사가 일부 발생하며 계약 전 관련 도면, 모형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전용 재활용품보관소가 서측 근린공원과 근린생활시설 경계부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인접한 저층 세대는 냄새 및 시각적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외부 대지에 물건의 적치, 시설물 적치, 영업등을 위한 대지의 사용 및 점용은 불가합니다.

# ■ 주민공동시설

- 단지 북측 주출입구 인근에 경비실, 문주가 각각 설치됩니다.
- 101동, 102동 사이에 시니어클럽(경로당)이 설치됩니다.
- 101동 필로티에 설치되는 학원 차량 대기장소인 키즈스테이션은 차량 출입구에 인접하여 소음 및 매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6동 전면부 대지경계에 인접하여 다함께돌봄센터, 키즈클럽(어린이집)이 설치됩니다.
- 다함께돌봄센터, 키즈클럽(어린이집) 하부 지하1층에 북클럽(작은도서관), 독서실(열람실) 등이 설치됩니다.
- 105동, 107동 사이 지하1층에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센터, 탁구장, 카페테리아(주민카페), 회의실, 관리사무소, 키즈카페, 펫케어존, 커뮤니티룸 등 이 설치됩니다.
- 101동, 106동 배면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됩니다.
- 부대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동일 면적 내에서 해당 용도의 구성 및 실 구획, 실면적 등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내부 집기, 비품, 기구 및 가구류의 종류 및 개수,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은 실시공시 분양 홍보물에 표현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 내부 집기, 비품, 기구 및 가구류의 종류 및 개수,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은 인허가 도면과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센터 등 실내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業])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시니어클럽),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키즈클럽)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장비 설치로 인하여 소음 및 시각적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과 인 접한 세대의 경우 계약 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니어클럽(경로당) 운영주체는 준공 사용검사 후 해당읍·면(동)사무소에 경로당 등록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키즈클럽(어린이집) 운영주체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에 설치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은 관련법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이상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설치/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설치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 2 제3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경우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로당, 어린이집, 돌봄센터는 바닥난방과 천정형 냉난방기가 설치됩니다.

## ■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은 지하 2개층이며, 지하1층 주차장으로 직진입하는 구조로 주차출입구 유효높이는 2.7m이상, 지하2층은 유효높이 2.3m이상, 주차장 차로 폭은 6.0m이상 으로 설치될 예 정입니다.
- 주차대수는 총 1,403대 설치되며, 공동주택 1,395대(세대당1.4대 지하층), 근린생활시설 주차 8대(지상1층)로 별도 구획/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80개소 [공동주택: 급속 32개소, 완속 38개소, 콘센트형 10개소]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송풍기 작동시 소음 및 바람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은 각동마다 2개층씩 출입이 가능합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기둥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이용 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아 일부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특성상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지하층에 설치되는 전기실/발전기실, 펌프실/저수조의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일부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펌프실, 발전기실, 전기실 등 설비공간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지상에 노출된 환기 시설물은 건축물의 특성상 필요한 시설로서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형태와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옥외 공간)에 환기탑(DA)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1층에 별도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 ■ 조경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의 일부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결속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수목이 고사하지 않은 경우는 결속재료 미제거로 인한 시공하자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을 위하여 공기안전매트 설치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해당 자리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불가능합니다.
- 각 동의 일부 세대 전·후면 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부 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대지 경계부에는 레벨차이에 의해 일부 단 차이 및 안전난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실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 중 실외 운동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수목 유지관리는 입주자 관리사항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하자발생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송풍기 작동시 소음 및 바람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및 서비스면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창호 사양은 "발코니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시 설치되는 마감자재는 외산 OEM제품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TV, 세탁기 등), 유상옵션 품목,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 설치된 환기설비(환기캡 등)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설치하였으나, 실제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 설치된 그릴 및 PL창호는 본 공사 시 제조사, 업체, 규격, 사양, 하드웨어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 설치된 가구(주방, 일반)의 내부 마감재, 액세서리 및 하드웨어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 설치된 시스템 가구는 본 공사 시 제조사, 업체, 규격, 사양, 하드웨어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 설치된 AL도어는 본 공사 시 제조사, 업체, 규격, 사양, 하드웨어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 스포트라이트 조명은 견본주택 전시용 조명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 발코니는 실시공시 단열재 설치 등에 따라 크기 및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 및 개수는 견본주택 소방 준공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실제 세대 내에 설치되는 소화설비 등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 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가구 및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홈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환기 디퓨저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합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는 층별, 위치별로 같은 평형대이나 실사용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 주택형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 신발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 의 관리 및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본 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취실 등의 천장고는 실 시공 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 내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석재류, 타일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라 보일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 여야 합니다.
- 세탁기 등을 두는 다용도실 및 발코니, 실외기실의 경우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입니다.

## ■ 안목/치수

- 주택형의 층고는 기준층(층고 : 2.85m. 천장고 : 2.3m), 최상층(층고 : 3.0m. 천장고 : 2.3m)이며, 우물천장은 2.45m으로 동일합니다.
- 건축/인테리어 도면의 안목치수는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 석재/타일

- 인조석의 자연스러운 패턴은 자재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워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타일 및 인조석(주방, 아일랜드 상판 유상옵션)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줄눈위치 및 각 액세서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벽, 욕실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창호

- 세대의 창호의 형태 및 재질, 색상, 크기, 창호분할의 위치 및 개폐방향, 위치, 유리사양, 창호 분할수 등은 현장 여건 및 미관, 내풍압,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방 분합문 커텐박스 높이는 스프링클러 배관설치에 따라 높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세대의 위아래 인접세대의 확장여부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텐박스의 깊이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할 수 있고, 이는 공동주택 성능을 위한 것으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세대 외부창호 및 계단실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층별,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가구

- 세대 내 가구는 추후 입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주요 입찰 참여업체는 내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가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내부에 설치되는 주방가구(상,하부장), 신발장, 화장대, 붙박이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상하부, 측후면 등 비노출면에는 마루, 타일, 도배지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가구 혹은 거울 뒷면 등 보이지 않는 곳은 실제 시공 시 재생 타일을 이용하여 마감하거나 혹은 마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개별 냉장고 크기에 따라 주방쪽으로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실외기공간

- 본 공사 시 세대 발코니의 유효길이 및 높이 등은 해당 세대의 층수, 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에는 화재 시 인접 세대로의 대피를 위한 하향식 피난시설이 설치된 구조로 비난방 공간이므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 및 오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선혹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바닥 레벨은 해당 부위의 용도에 따라 동일 발코니 내에서 단 높이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기능과 관련된 사항으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인 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확장형 단위세대의 발코니 중 비확장 발코니(안방, 주방)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체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결로방지단열재(T23) 및 브라켓이 설치 예정으로 견본주택에 반영되어 있는 위치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청약, 계약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향식 피난시설의 접이식사다리 덮개는 SUS재질 마감입니다.
- 옵션 냉방기기가 아닌 개별 냉방기기 사용시 실외기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청약. 계약하여야 합니다.
- 각 동 최하층 세대 실외기실에는 하향식 피난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필로티 상부세대의 경우 비상시 완강기를 이용하여 대피하여야 합니다.

#### ■ 전기/설비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및 전기 마감재 위치는 본 공사 시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시설의 접이식사다리 덮개는 SUS재질 마감입니다
-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조절기 등의 위치는 타일의 줄눈 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 침실 벽체 1개소에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이 노출 설치되어 시각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배관은 기본 타입(거실, 안방)에 설치됩니다.
- 욕실내 샤워부스 바닥과 욕조 바닥에는 난방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욕실 내부 별도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습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됩니다.
- 세대, 주방, 욕실,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일부의 주방 상부장은 천장에서 이격되어 시공됩니다.
- 가스배관은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 및 가스차단기까지 시공되며, 차단기 이후 가스쿡탑으로 인입되는 가스배관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필요시 계약자가 설치하여야 함을 인 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냉장고 급수용 공배관은 냉장고 자리 벽면 좌측 하부에서 주방 개수대 하부장(온수분배기 근처)까지 매립배관 되며, 사용자가 별도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배관을 분기하고 공배관에 배관을 삽입 후 연결하여 사용하여아 합니다.
- 각층 세대 인접 공용부 피트 내부에 급수, 급탕, 난방 계량기가 설치됩니다.
- 동별 외부 가스 입상배관은 3층까지 방범용 배관카바가 설치됩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렌지후드 옵션형 선택시 상부장 없이 커버만 설치됨)
-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씽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용 전열교환기 급배기용 디퓨져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 욕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신발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욕실 내부의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단높이가 부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욕실은 시스템 욕실로 적용되며, 견본주택을 방문 확인하시어 인지하고 청약, 계약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유상옵션/선택품목

- 유상옵션 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추가 선택 계약 시에만 설치되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각 평형별 유.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공사, 오브제 컬렉션 컨버터블 패키지(옵션:냉동/냉장/김치-이하 오브제 컨버터블),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및 기타 별도 유상옵션 계약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합니다.(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 일반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동 번호는 모형 및 각종 카달로그, CG 등에 표현된 번호가 아닌 블록(7블러) 번호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 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이동통신설비, 태양광설비,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권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 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급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발코니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물건의 적치 등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하향식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완강기 설치 예외에 해당하여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단 필로티 상부세대는 피난을 위하여 완강기 설치 예정임)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주택건설지역 인근 기반시설(도로, 녹지(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공원, 학교, 상/하수, 전기/난방, 저류시설, 방음벽, 가로수,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브레인시티 택지개발주체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대로변 방향으로 설치되는 방음벽, 녹지(완충녹지 및 경관녹지)의 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브레인시티 택지개발주체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형태, 크기, 사업지 경계로 위치 이동 등)·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부의 녹지, 근린공원, 공공시설물, 의료시설, 문화 및 지원시설, 학교 설립 및 완공계획 등은 자치단체 일정에 의하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이상의 타 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 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 진행 중 아파트 현장 여건에 따라 구조·성능·상품개선, 하자예방, 설계 및 도면 표현의 오류·정정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법적으로 동의서가 징구되어야하는 사항(주택법 시행규칙11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기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커뮤니티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본 공사시 단지 계획고에 의한 고저차 등 대지 주변현황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재활용품보관소, 외부 엘리베이터 및 외부 계단 등의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용상의 편리성과 디자인의 개선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른 용 도로의 변경 및 통합, 실내구획, 위치 및 외관과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본 사업장 준공 시 경계(확정)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함)
-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사업주체에게 주장할 수 없 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방문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 으시길 바랍니다.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안내,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컴퓨터그래픽(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단위세대, 기타 조경 컷 등) 및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와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된 상태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관련 도면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신탁사, 시공사의 타 현장 아파트 등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사업장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합니다.
- 세대 층간바닥구조의 재질, 두께, 사양, 제품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경량/중량충격음 차단성능 성능등급은 표준실험동 등에서 관련기준 절차에 따른 등급으로 실제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및 절차(사후확인제도, `22.8.4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건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확인방법 준용)에 따라 확인한 성능등급과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경량/중량충격음 차단성능 성능등급은 표준실험동 등에서 관련기준 절차에 따른 등급으로 실제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및 절차(사후확

인제도. `22.8.4일 이전 사업계획증인 신청건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확인방법 준용)에 따라 확인한 성능등급과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신탁사 및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공개 후 당해 택지지구 또는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부대 편의시설, 조경시설 등을 당해 주택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서에 적용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의 추가 또는 교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하신 후 청약(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현장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도서에 기록된 각종 상세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 세대/규격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제공/전시품목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와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의자, 식탁세트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TV, 세탁기 등),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됩니다.

#### ■ 동별 유의사항

- 각 동에 인접 설치되는 각종 단지 내 공용시설물이 근접 설치되므로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주동 옥상 파라펫 및 옥탑구조물에는 상향 투광 경관조명이 설치되며, 상세 위치는 실시공시 결정됩니다.
- 주동일부 지상층에는 지하 제연휀룸 급기를 위한 제연급기구가 돌출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각 동별 필로티 및 동출입구 인근에 분산 설치됩니다.
- 101동, 102동, 103동은 서측 근린공원과 인접하여 소음 및 프라이버시, 일조권, 조망권 등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인근으로 재활용품보관소가 위치하며, 이로 인해 해충, 냄새 및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품보관소는 101동 배면부 1개소, 102동 배면부 1개소, 103동 배면부 1개소, 104동 측면부 1개소, 105동 배면부 1개소, 106동 배면부 파고라 인근 1개소, 107동 배면부 1개소 로 총 7개소이며 각동 인접하여 분산 배치됩니다.
- 전동 지붕층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되며 설비의 세부사항은 실시공시 결정되며, 설치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배면부, 103동 전면부, 104동 전면부, 105동 배면부, 106동 전면부와 다함께 돌봄센터 사이, 107동 전면부, 주민운동시설 인근에 TOP-LIGHT가 분산 설치 됩니다.
- 102동, 105동 배면부에는 단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공공보행로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며, 외부인의 출입,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 이 있을 수 있으니, 모형도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3동과 104동 사이 1개소, 105동과 107동 사이 선큰에 인접하여 2개소에 외부계단 및 외부 엘리베이터(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 될 예정입니다.
- 각 동은 필로티 및 전면부, 후면부에서 각 코어로 진입할 수 있는 경사로 및 계단이 설치됩니다.
- 각동 꺽임부(접합부), 필로티, 주출입구, 세대 전면부, 코어에 인접하여 DA가 설치되어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모형도 등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101, 106동 배면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모형도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7동 배면부에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설치되어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모형도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출입구의 차량 램프 진입로를 바라보는 101동, 107동 일부 세대는 차량 진출입시 불빛 등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사이에는 시니어클럽(경로당), 107동 전면에는 선큰, 105동 배면, 106동 전면에는 키즈클럽(어린이집)이 인접하여 있어 각 세대는 환경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3동 전면부 어린이놀이터 인근에 설치되는 DA는 추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103동, 104동 사이에 위치한 조경 공간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냄새,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모형도 등에서 확인하셔서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5동, 107동 사이 지하1층에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센터, 탁구장, 카페테리아(주민카페), 주민회의실, 관리사무소, 북클럽(작은도서관), 독서실등 위치하여 소음 및 진동 등 생활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 106동 동측은 초등학교(예정) 및 유치원(예정) 통학로, 통학차량 대기공간 및 어린이 공원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6동 1호 라인 1층 전면부에 인접하여 DA(DRY AREA) 설치 예정이며,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서는 일조권, 환경권, 조망권, 냄새,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 함이 있을 수 있으니 모형도 등에 표현된 DA설치(예정) 문구 등을 통하여 위치 확인하셔서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 쌓기, 옹벽,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 습니다.
- 103동, 104동 측면 대로변 방향으로 최대 6.0m 높이의 방음벽이 계획되어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103동, 104동 측면 대로변 방향으로 설치되는 방음벽, 녹지(완충녹지, 연결녹지)의 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브레인시티 택지개발주체 등이 설치하 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형태, 크기, 사업지 경계로 위치 이동 등)·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방음벽 설치 위치는 택지조성 여건 및 관련 기관의 인허가 등에 따라 대지경계선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이격거리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와 면적에 따라 설치 대수는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유의사항

- 견본주택은 59A, 84C타입만 설치되며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분양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또는 동가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추가선택품목이 포함되어 시공되어 있으므로 확장기본형(유상옵션 미포함)의 경우 반드시 당사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를 참고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 등은 당사에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이고 내부 촬영 동영상의 복사, 반출, 캡처 등을 통한 외부 유출은 절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시공시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선택품목, 견본주택 연출용 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침대, 소파, 책상, 의자, 식탁, 커텐, 액자, 조명,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및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TV, 세탁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본공사 미시공으로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승강기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계획 승인도서(변경승인 및 신고포함)에 준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가구, 창호(향후 풍압테스트에 따라 조정)등은 본 공사 시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VR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노출되어 설치된 전시조명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환기디퓨저, 욕실 배기팬, 에어컨 매립배관, 온수분배기, 우/오수 배관, 선홈통, 위생기구류, 악세사리류, 온도조절기, 환기조절기,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 양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동질 및 동급·동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등)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제품 및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드라이 에어리어,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 조명기구, 분전함의 설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본 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냉방전용 시스템 에어컨이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설치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 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단지모형, 커뮤니티시설 및 단위세대 이미지 등 포함), 카탈로그 또는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투시도 등의 이미지, 사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단지 내 실제 계획고에 의한 시공으로 이미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 인쇄물, 견본주택 내 사인물)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물에 표시된 각종사실(학교, 도로명, 주변 시설물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커튼, 침대, 식탁, 책상, 의자, 가전, 소파, 거실장 등의 이동식 가구, 보조조명, 현관신발장 하부 간접조명 및 커튼박스 내부조명, 액자 및 소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시공 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주방가구, 일반가구, 수납공간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및 아파트 단지 내외부의 요소들이 모두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주방 발코니도어, 실외기실그릴 등은 본 공사 시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프레임 일부, 개폐방향,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배선기구,월패드,콘센트,스위치의 제품사양은 동질 및 동급, 동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전시 세대내 커튼박스 내부조명은 연출용 전시조명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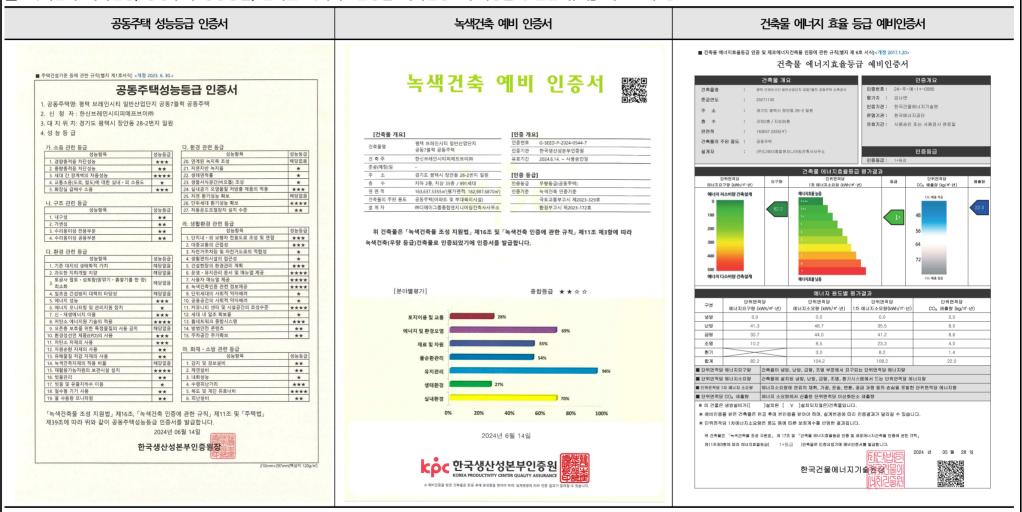
# ■ 사이버모델하우스 유의사항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 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VR동영상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을 사전에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의 추가선택형 품목,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 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 홍보 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 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센터, 다목적체육관, 탁구장, 주민카페, 주민회의실, 관리사무소, 북클럽, 키즈클럽, 시니어클럽, 다합께돌봄센터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 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에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도 및 홍보물상 표현된 지구 내 학교, 공원, 도로계획, 지구경계 등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향후 실시계획 및 공사중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환기디퓨저, 욕실 배기팬, 에어컨 매립배관, 온수분배기, 우/오수 배관, 선홈통, 위생기구류, 악세사리류, 온도조절기, 환기조절기,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

양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동질 및 동급, 동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조명기구,배선기구,월패드,콘센트,스위치의 제품사양은 동질 및 동급, 동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내 단지배치도 등 이미지에 표현된 단지 남동측의 저류지는 다량의 비가 유입되어 비로 가득찬 상태를 표현하였으며, 비가 오지 않는 평시에는 저류지의 바닥과 수로가 노 출되니 반드시 현장에 방문하여 저류지의 평시 상태를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녹색건축 예비인증, 공동주택 성능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리칼리 진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 분	등 급
건축구조설계기준(KDS411700)	내진능력Ⅵ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VII)으로 표기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주택법」제57조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분양가 주요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 총 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 비밀보호등을 위해 사후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구 분	적 <del>용총</del> 액		구	분	적 <del>용총</del> 액			구 분	적 <del>용총</del> 액
		택지매입원가	103,838,397,123			철근콘크리트공사	97,164,785,000			위생기구공사	3,571,789,000
		기간이자	9,924,722,702			용접공사	0	]		난방설비공사	5,059,081,000
택기	[] []	필요적 경비	5,435,185,954			조적공사	1,666,992,000		기계	가스설비공사	946,147,000
		그밖의 비용	17,736,237,915			미장공사	1,681,700,000		설비	자동제어설비공사	270,001,000
		계	136,934,543,694			단열공사	3,022,589,000			특수설비공사	843,180,000
		토공사	6,849,976,000			방수, 방습공사	1,580,378,000			공조설비공사	1,304,721,000
		흙막이공사	0			목공사	4,681,014,000	공사비		전기설비공사	11,744,548,000
		비탈면보호공사	0			가구공사	3,496,449,000		그밖의	정보통신공사	5,122,529,000
		옹벽공사	800,097,000		건축	금속공사	4,986,703,000		공종	소방설비공사	12,536,280,000
	토목	석축공사	0			지붕 및 홈통공사	76,229,000			승강기공사	5,762,405,000
		우, 오수공사	1,958,624,000			창호공사	4,080,197,000		그밖의	일반관리비	6,744,955,000
		공동구공사	0			유리공사	1,379,857,000		공사비	이 윤	2,890,695,00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0	공사 비		타일공사	6,784,734,000			계	234,489,574,000
공사		도로포장공사	1,409,038,000			돌공사	1,793,747,000			설계비	2,309,270,000
비		교통안전시설물공사	0			도장공사	1,721,776,000			감리비	6,481,787,700
		정화조시설공사	0			도배공사	1,000,508,000			일반분양시설경비	12,445,696,301
		조경공사	5,623,713,000			수장공사	1,261,261,000	간접비		분담금 및 부담금	8,676,000,000
		부대시설공사	1,069,551,000			주방용구공사	2,759,351,000			보상비	0
		공통가설공사	5,433,887,000			잡공사	2,437,517,000			기타 사업비성 경비	34,575,082,681
		가시설물공사	3,318,235,000			급수설비공사	5,056,794,000			계	64,487,836,682
	건축	지정 및 기초공사	0		기계 설비	급탕설비공사	2,529,541,000		=	1밖의 비용	43,592,045,624
		철골공사	0			오배수설비공사	2,068,000,000		7	합계	479,504,000,000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공시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항 목	심사결과금액	
	법정	9,924,722,702	
	제서		5,435,185,954
EHTILI 71 ALUI		반 공사비	9,661,061,398
택지비가산비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4,015,489,688
	택지와 -	관련된 경비	4,060,017,296
	소 계(택지	[비 가산항목)	33,096,477,038
	구조형식어	7,035,946,327	
	법정초과 복	부리시설 건축비	2,233,592,188
		홈네트워크	9,712,401,600
	인텔리전트 설비공사비	초고속통신특등급	2,472,679,200
	한글대전트 글바이시미	에어컨냉매배관	1,459,232,820
건축비가산비		기계환기설비	4,619,850,390
신축하기신하	공동주	택성능등급	9,381,261,769
		형 친환경주택	3,739,731,156
	지하주차장 중	1,073,169,810	
	법령 개정에 따른가산비	전기자동차충전기	339,642,380
		<del>보증수수료</del>	1,524,613,880
	소 계(건	축비 가산항목)	43,592,121,520

#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정보통신감리
회사명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선경엔지니어링	㈜세종씨엠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4,140,033,700	1,102,405,000	1,157,069,000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4-101-0010900호	335,652,8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세 01202024-101-0010900호	553,032,000,000 ⊡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 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 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 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 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 분양대금 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분		시공사			
	ᄑ	공동사업주체 대표자		등록업자		시6시
상	호 한신브레인시티피에프브이(주) ㈜대진주택건설		㈜와이디인터내셔날	주식회사 플러스인터내셔날	한신공영(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3길 22, 202호 (논현동, 조광빌딩)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길 16, 2층 (서초동, N PARK)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1606호 (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빌딩 동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3길 7, 402호(논현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법인등	등록번호	110111-7816262	110111-7029013	110111-7210068	110111-4098649	110111-0075683
		02-547-8026	02-3276-6795	02-320-8221	02-547-8026	02-3393-3114

#### ■견본주택 안내

비전 1동 행정복자센터 당한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735-8번지
	견본주택 운영 관련	※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의 관람이 불가 할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관람 가능 여부를 대표번호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pt-thehue.com/
	분양 문의	1899-5833
	기타 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견본주택